

야생동물 질병관리 정책세미나 개최 계획(안)

- ◆ 국가차원의 체계적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개최 추진
- 야생동물 질병 관리제도(야생생물법 개정안, '15.3 시행예정), 국립 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 방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 행사 개요

- (제목) 야생동물 질병관리 정책세미나
- (時/所) '14. 9. 12(화) 14:00~16:2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환경부, 광주광역시, 국회 김동철의원실
- (주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야생동물보건연구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기관
- (참석자) 약 40여명
 - (주요 참석자) 환경부, 국회의원*
 - * 김동철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주영순의원(새누리당, 환노위)
 - (해외전문가) Dr. Jonathan Sleeman(미국 야생동물 보건연구원장), Dr. Tomoko Ishibashi (세계동물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부대표) 등
 - (일반참석자)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등 산하기관), 관계부처(복지부, 농식품부 등) 관련단체(야생동물의학회, 대한수의학회 등)

□ 행사 주요 내용

- (인사말) 환경부(차관님), 국회의원
- 야생동물 질병 관리제도(법률 개정, 보건연구원 건립 등) 발표
- 국내·외 전문가 발표 및 관계자 토론 등

□ 세부 일정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4:00~14:2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5'	일정소개	사회자
	15'	인사말씀	김삼권 국립환경과학원장 김동철의원 주영순의원
14:25~15:15	주제 발표(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사회자
	10'	① 야생동물질병 관리정책 추진 현황	생물다양성과장
	15'	② 세계 동물보건기구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정책	Tomoko Ishibashi ¹
	15'	③ 미국 야생동물보건원의 야생동물 관리 체계와 역할	Jonathan Sleeman ²
	10'	④ 국립야생동물보건원 건립 기본계획(안) 주요 결과	서울대학교 이향교수
15:15~16:20	10'	휴식	-
	55'	종합토론	토론자 및 청중
16:20		폐회	

1. Tomoko Ishibashi : 세계동물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부대표
2. Jonathan Sleeman : 미국 국립야생동물보건원장

□ 사회 및 토론 참석자

구 분	소 속	성명	비 고
사 회 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정수명 사무관	
토론자	서울대학교	채준석 교수	좌 장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장	가축 질병 정책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야생동물의학회	연성찬 교수	야생동물 질병관리
	국립환경과학원	서재화 연구관	야생동물 질병관리
	국립생태원	김영준 팀장	야생동물 질병생태
	환경건강안전연구소	김정수 소장	야생동물 질병정책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상무	동물 질병 관리

참고1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 추진 개요

□ 사업목적

- AI 등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치료, 조사·연구 및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질병연구시설·인프라 구축
- 금년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등 야생동물의 질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나, 전문시설 등 기본인프라도 부재한 상태
- * (VIP 지시사항) 그간 AI 발생원인은 야생조류로 추정되어 왔으나 과학적 원인 분석은 부족하여, 과학적 원인 분석을 통한 근본적 대책수립이 필요('14.2.24, 국무회의)

□ 그간 추진 경위

- '10. 11 :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 마스터플랜('11~'20, 국무회의 확정)
 - 야생동물의 인수공통질병 등 연구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 '11.7 : 야생동물 질병연구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1.7 공포)
- '13. ~ :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 추진
 - 지자체(광주) 유치 신청('13. 2), '14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200백만원) 반영
 - * 건립사업비 500억 이하로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은 아니나, 필요성 검토 차원에서 수행
- '14. 5~ : 타당성 조사 및 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건축면적 7,300㎡ (부지 19,000㎡)
- 사업비 : 197억원(국비)
-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89-2(광주시유지)
- 주요시설
 - (내부시설) 부검실, 실험실, 분석실, 관찰실, 유전자원수장고, 건강관리실, 중동물실, 소동물실, 연구실, 기자재보관실 등
 - (외부시설) 출입관리실, 차량소독장, 동물검역장, 실외사육장 등

□ 기관 주요 기능

- 야생동물 질병 예찰·감시
 - 야생동물 질병 진단·탐지기술 개발 및 표준진단법 개발
 - 야생동물 질병 예찰·감시 시스템 운영 및 발생 예측
- 야생동물 질병 대응 및 연구·개발
 - 야생동물의 병원성 및 환경오염물질(납중독, 기름유출 등) 독성 연구
 - 야생동물 질병 방역 시스템 구축 및 긴급대응팀 운영
- 보건 및 방역당국 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주요 질병 관리 부처와 현황 공유, 공동연구 등 협력체계 구축
 - 야생동물 질병 예찰·감시 국내·외 협력을 통한 질병유입 사전대응
- 야생동물 질병 인프라 구축·관리
 - 야생동물 질병 시료 수집 및 활용 체계 구축·운영

□ 건립 타당성 평가 결과

- KDI 예비타당성평가 기법을 준용, 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비교·분석 한 결과 편익/비용비 2.16 도출
- (편익) SARS 등의 질병이 국내 GDP에 미치는 피해*를 계산하여, 보건연구원으로 인하여 피해가 1/3로 감소한다고 가정
- * 해외 사례 인용(Wong, R. and Siu, A. 2008 Counting the Economic Cost of SARS)
- (비용) 보건연구원 건립 사업비, 연간 인건비(최대 150명 가정) 등 운영비

현재가치 합계(단위 : 억원)		편익/비용비 (B/C ratio)
편익	비용	
699.0558	322.297	2.16

□ 향후 추진 계획

- '14. 9 :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기본설계 추진
- '15.1~ : 실시설계, 토지매입 등 건립 추진
- * '15년도 실시설계(540백만원), 토지매입(460백만원) 등 1,000백만원 반영(기재부 검토 결과)

참고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야생동물의 질병 관리 및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년 3월 국회 통과, '15년 3월 시행 예정

구분	야생동물질병	감염병	가축전염병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기본 관리	(이전) 규정 없음 (개정안)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야생동물질병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4조의3)	·보건복지부에서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에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제3조)
현황 파악	(이전) 규정 없음 (개정안)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 환경부·지자체에 보고(안 제34조의8)	·법정감염병을 진단한 의료인은 관할 보건소장에 보고하고, 관할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지자체에 보고(제11조, 제13조)	·법정가축전염병을 진단한 의사 등은 지자체에 신고·보고하고, 지자체는 국립가축방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
진단	(이전) 규정 없음 (개정안)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 질병진단 요령, 진단기관 지정 기준 등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안 제34조의8)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제11조)	○ 가축전염병 병성감정은 국가(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검역본부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 병성감정 요령, 절차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고시(제12조)
병원체 관리	(이전) 규정 없음 (개정안) 병원체 관리, 시료의 포장·운반 및 취급 처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안 제34조의8)	·감염병 환자 등에서 고위험병원체를 분리,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동계획 등을 신고(제21조)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신고(제14조)
역학 조사	(이전) 규정 없음 (개정안) 환경부장관, 지자체 등은 야생동물 질병 발생 또는 우려 시 역학조사 의뢰(안제34조의10)	·질병관리본부장, 지자체 등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을 시 지체없이 역학조사(제18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자체 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시 지체없이 역학조사(제13조)

참고 3 해외 야생동물 보건연구원 주요 사례

□ 미국 야생동물보건연구원(National Wildlife Health Center)

- 미국국립지리원의 야생생물청(FWS)의 야생동물질병연구소에서 야생동물질병의 조사·연구 총괄(1975~)
 - 미국내 38개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야생동물질병 모니터링과 조사연구 수행
 - 야생동물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기술적 지원, 정보 등을 공급
 - 미국 내 철새 등 야생동물의 질병과 관련된 연구·대응 기능 수행

※ 농업동식물검사청에서는 가축질병을 매개하는 동물질병을 조사연구

구 분	미시간 야생생물질병연구소	루이지애나 야생동물질병연구소
연면적 (㎡)	13,500㎡	5,200㎡
연구동 (억원)	600억원 ('03년 5800만\$) 부검실 등 11개 실험실 배치(BL3)	2004년 신축계획이 카트리나 태풍으로 지연('12-'14)
중점 기능	미시간주 사슴 등 대형포유류 질병조사 등	루이지애나주 야생동물질병조사 등 신축 후 매년 20,000점에서 40,000점으로 조사량 증가
사진 자료	 	

참고 4 주요 참석자(김동철 의원) 이력

○ 국회의원 김동철(金東喆)

- ▶ 1955년 광주광산구 출생
- ▶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학 력]

- ▶ 광주일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 력]

- ▶ 한국산업은행 근무
 - ▶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
 - ▶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 ▶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 ▶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 ▶ 제17대(광주 광산구)·18대·19대(광주 광산구甲) 국회의원(現)
 -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 ▶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現)
 - ▶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現)
-